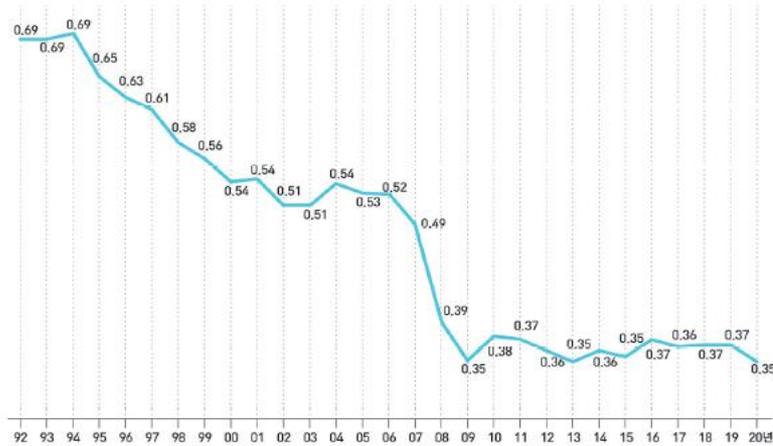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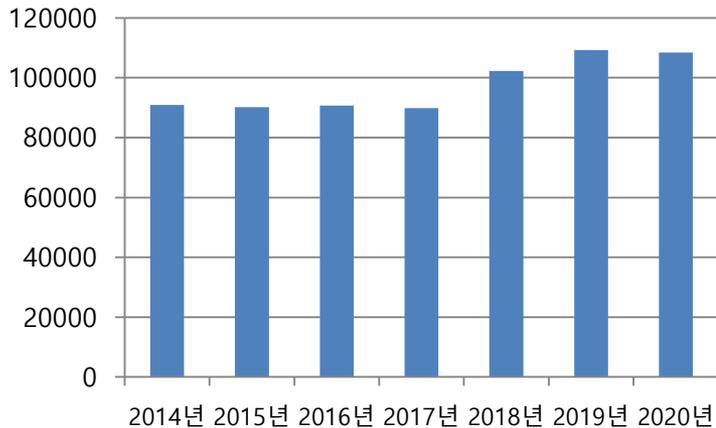
미국, 영국, 한국, 구미 산업재해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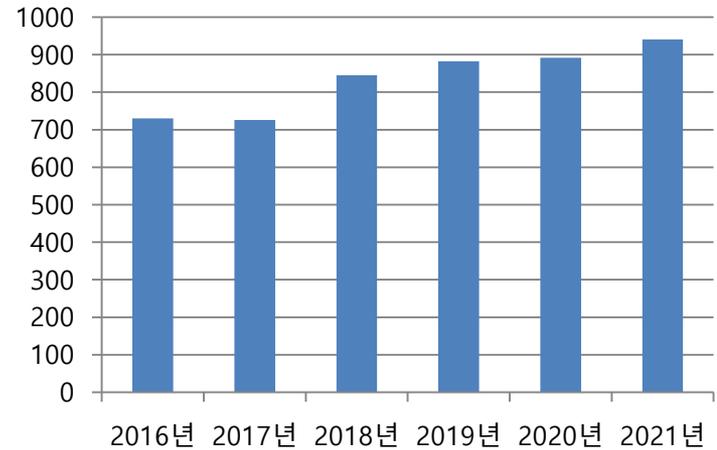
미국 산재 사고사망만인율



영국 10만명당 재해 발생 건수



한국 산재 발생 건수



구미 산재 발생 건수

산업안전보건법 내 지자체 책무

- 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**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**하여야 한다.
- 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**사업장 지도**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**행정적·재정적 지원**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**지방자치단체가 조례**로 정할 수 있다.

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- 제4조(사업 및 예산 지원 등) 시장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1. 근로자의 날 관련 행사
 2. 근로조건 개선,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·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
 3. 노사발전을 위한 노동정보지원 사업 운영
 4. 노사민정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운영
 5.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, 문화행사, 걷기대회, 등반대회 등 화합행사
 6. 노동단체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, 연수, 세미나 등 활동사업
 7. 근로자 국내·외 노동현장 및 산업연수
 - 8.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사업**
 9.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,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·창출,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2023년 노동복지과 사업

사업항목	예산(천원)	비고
노사상생연결고리구축 -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&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	1,831,488 (194,000)	도시비
외국인복지지원 -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, 문화축제 등	368,340	
근로자복지향상 - 근로자복지시설관리 등	4,688,728	
전문기능인양성사업 - 전국기능경기대회, 최고장인사업 등	79,660	
노동권익향상 - 감정노동자지원사업	79,000	
안전하고쾌적한근로환경조성 - 중대재해없는안전하고건강한일터조성	103,802	
기타	139,593	
합계	7,290,611	

경제지원국 2023년 예산 비교

부서	예산(천원)	비중
기업지원과	17,450,560	20.8%
노동복지과	7,290,611	8.7%
신성장산업과	31,411,404	37.5%
일자리경제과	19,600,649	23.4%
스마트산단과	8,044,106	8.6%
합계	83,797,330	100%